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2007. 11

정재호 · 김태훈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 론	7
II. 우리나라의 관세담보제도	9
1. 개 관	9
2. 담보제공 사유	11
가.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를 할 때	11
나. 상계관세의 잠정조치를 할 때	11
다.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12
라. 조건부 감면세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	12
마.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의 경우	13
바.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의 경우	13
사. 특허보세구역 내의 담보	13
아. 보세공장 외 작업의 경우	14
자.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경우	14
차. 보세운송의 경우	14
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 보류요청의 경우	14
타. 수입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15
파.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의 경우	16
하.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의 경우	16
거.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일괄납부하는 경우	16
3. 담보제공자	16
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	17
나. 기타 사유의 경우	17

4. 담보제공	18
가. 담보제공 절차.....	18
나. 포괄담보.....	20
다. 담보면제와 신용담보.....	22
5. 담보물의 종류.....	29
가. 담보물의 종류.....	29
나. 담보물의 내용.....	29
다. 담보물의 평가.....	30
6. 담보제공 사유별 담보액 평가.....	31
가.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 시.....	31
나. 감면세 또는 분할납부 적용물품	31
다. 기타의 사유.....	32
7. 담보의 변경.....	32
8. 담보의 종료.....	33
가. 담보의 해제.....	33
나. 담보의 관세충당.....	33
Ⅲ.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35
1. EU.....	35
가. 담보제공 사유.....	35
나. 담보제공자.....	36
다. 담보제공 방법.....	36
라. 담보물.....	37
마. 담보의 변경.....	38
바. 담보의 종료.....	38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38
2. 일 본.....	39
가. 담보제공 사유.....	39

나. 담보제공자	40
다. 담보제공 방법	40
라. 담보물	41
마. 담보의 변경	43
바. 담보의 종료	43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46
3. 미 국	47
가. 관세담보제도의 개요	47
나. 관세보증(Customs Bonds) 제공 사유	48
다. 관세보증(Customs Bonds) 제공자	48
라. 관세보증(Customs Bonds) 제공 방법	49
마. 담보물 및 관세보증서(Customs Bonds)	50
바. 관세보증(Customs Bonds)의 변경 및 종료	52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53
4. 호 주	54
가. 담보제공 사유	54
나. 담보제공자	57
다. 담보제공 방법	57
라. 담보물	58
마. 담보의 변경	58
바. 담보의 종료	58
아. 관세채권 확보수단	59
5. 영 국	59
가. 담보제공 사유	60
나. 담보제공자	63
다. 담보제공 방법	63
라. 담보물	64
마. 담보의 변경	64

바. 담보의 종료.....	64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65
IV. 시사점.....	66
참고문헌.....	69

I. 서론

세계 무역환경의 자유화 및 개방화로 인해 세계 각국 간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변화된 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처한 국가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역량은 경제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는 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바꾸었으며, 관세도 사후에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통관절차는 간소화되었고 수출입업체 물류비 절감으로 수출입업체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납부자가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이후에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¹⁾. 이로 인해 통관과 관련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민간과 정부의 수입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의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관세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관은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납부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관세담보제도라고 한다.

관세담보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담보로 공법상 담보이며, 그 성격은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로 인하여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결과로 발생하는 관세채권의 미회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이다. 따라서 관세담보는 통관절차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관세채권의 확보 가능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채권 확보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관세담보제도와 관세채권 확보수단에 관한 주요국(EU, 일본, 미국, 호주, 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주요국의 관세법에서 규정한 관세담보 제공사유와 그 사유에

1) 이 경우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따른 운영방법 및 관세채권의 확보수단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국의 관세담보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하여 관세담보제도와 관련된 국내·외의 학술 서적 및 선행된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국의 관세법령에서 담보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관세담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관세담보와 관련된 주요국(EU, 영국, 일본, 미국, 호주)의 제도에 대하여 실태분석하였으며, 셋째,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II. 우리나라의 관세담보제도

1. 개 관

관세담보제도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담보제도로써 공법상 담보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담보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담보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인 채권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물건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하는 제도이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담보제도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는데, 인적담보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재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적담보에는 보증채무(保證債務)와 연대채무(連帶債務)가 있다. 또한 물적담보는 담보로 제공될 특정의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채권자만이 갖도록 하여 채권의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물적담보에는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등이 있다.

담보제도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므로 이로 인한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담보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소유하는 것으로서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의 가치 평가는 담보할 채권의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많아야 한다. 다음은 관세와 관세담보제도의 내용이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는 소비세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輸出稅),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輸入稅)로 분류할 수 있다²⁾. 하지만, 현재는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라고 파악할 수 있다.

관세담보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세채권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이다. 관세담보제도는 국가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물건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법상의 담보제도라고 하겠다.

관세담보는 일반담보, 특별담보로 구분한다. 일반담보³⁾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으로 관세가 미납된 수입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담보는 특정한 재산의 담보를 위하여 특정한 목적물을 제공해야 하는 담보로 관세청장의 명령에 따라 특정한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별담보의 목적물에는 금전, 특정 채권, 특정 증권 및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이 있다.

담보는 원칙적으로 개별 채권에 대해서 하나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개별담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물품을 통관할 경우, 매 건별로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정기간(1년) 일정액의 담보를 미리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담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통관절차가 신속해지고 관세 등 제 세액을 사후에 납부하거나 정산하여 물류 흐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를 신용담보라고 한다.

2)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通過稅).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

3) 관세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것으로 법정담보라고도 한다.

2. 담보제공 사유

세관은 관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시점에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제공 사유는 관세법의 개별 조문에 흩어져 있는데, 주로 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담할 경우, 감면이나 분할납부의 경우 및 신고 전에 입출·반출되는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를 할 때(관세법 제52조, 임의담보)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관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나. 상계관세의 잠정조치를 할 때(관세법 제59조, 임의담보)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 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의 부과를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

이 확인되는 경우

-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다.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관세법 제97조, 필요적 담보, 포괄담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라. 조건부 감면세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관세법 제108조, 임의담보)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법 기타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감면을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마.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의 경우(관세법 제156조, 임의 담보, 포괄담보)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바.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의 경우(관세법 제158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보세구역 외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담보제공·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보세공장 외에서의 작업(제187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 특허보세구역 내의 담보(관세법 제181조, 임의담보)

운영인이 보세창고·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아. 보세공장 외 작업의 경우(관세법 제187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세관장은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장소·물품 등을 정하여 당해 보세공장 외에서 보세공장(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외 작업에 대해 허가를 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경우(관세법 제202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담보제공·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보세공장 외 작업의 경우(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 보세운송의 경우(관세법 제218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 보류요청의 경우(관세법 제235조, 필요적 담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수출

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타. 수입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관세법 제248조, 필요적 담보, 포괄 담보)

세관장은 수출·수입 및 반송신고(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나 전자송달(제327조 제1항)⁴⁾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수입 및 반송신고(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법 기타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 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을 승인한 경우
-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

4)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파.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의 경우(관세법 제252조, 필요적 담보, 포괄 담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출·수입 및 반송신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 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관세법 제24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하.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의 경우(관세법 제253조, 필요적 담보, 포괄 담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장치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거.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일괄납부하는 경우(포괄담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의무자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관세납부를 보증한 자

이다. 다음은 각 사유별 담보제공의무자이다.

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로 담보제공의무자이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관세법 제252조)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금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 화주에 해당되는 자이다.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나. 기타 사유의 경우

다음은 수입신고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담보제공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보제공 의무자이다.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선용품·기용품 또는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외국물품을 바로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의 적재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아서 관세를 부담할 경우, 당해 적재허가를 받은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과 보수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관세법 제160조 제2항)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 관세법 기타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 보세구역 외에서 작업허가를 받은 물품(관세법 제187조 제6항)에 대하여는 보세공장 외 작업·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관세법 제217조의 규정)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에 반출함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관세법 제253조)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4. 담보제공

가. 담보제공 절차

-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증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

부하여야 한다.

- ④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은행지급보증인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납세보증보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신용보증인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약속어음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당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은행지급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와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당해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가 부동산·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⑦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물품의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 ⑧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⑨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관세법 제39조)를 할 수 있다.
 -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포괄담보

1) 포괄담보의 의의

포괄담보제도란 외국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물품을 통관할 때마다 매 건별로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정기간(1년) 일정액의 담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절차와 관세 등 제세액을 사후에 납부하거나 정산하도록 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는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⁵⁾.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포괄담보가 가능한 사유

다음은 포괄담보가 가능한 담보제공 사유이다⁶⁾.

-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의 경우(관세법 제156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의 경우(관세법 제158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 보세공장 외 작업의 경우(관세법 제187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경우(관세법 제202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 역외작업허가(관세법 제195조)
- 보세운송의 경우(관세법 제218조, 임의담보, 포괄담보)
- 수입신고수리 시 담보의 제공(관세법 제248조, 필요적 담보, 포괄담보)

5) 관세법 제24조 4항

6)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의 경우(관세법 제252조, 필요적 담보, 포괄담보)
-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의 경우(관세법 제253조, 필요적 담보, 포괄담보)
-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관세법 제97조, 필요적 담보, 포괄담보)
-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일괄납부하는 경우(환급특례법 제6조, 포괄담보)

3) 포괄담보업체 신청과 포괄담보물의 종류

포괄담보업체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⁷⁾과 포괄담보제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괄담보업체가 제공하는 담보물은 다음과 같다⁸⁾.

- 금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은행지급보증
- 납세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다만, 포괄담보로 제공되는 담보물이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인 경우 납세담보기간은 4월 이상인 것이어야 하고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고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당해 담보물이 사용된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월 내에 당해 관세 등 제세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7) 제출생략 가능

8)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4) 담보의 한도⁹⁾

□ 개별담보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¹⁰⁾.

관세 상당액이란 제세액(관세+내국세)+가산세+1차 가산금을 의미한다. 금전담보의 경우 담보금액은 제세액+가산세로 제세액의 120%¹¹⁾이며, 이 경우 총당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1차 가산금 3%가 제외된다.

납세보증서의 경우 추심 또는 매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동안 관세 등의 납기경과 가산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담보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제세액의 123%가 적용된다. 그리고 기타 담보물의 경우 거의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매각 등 관세법상의 평가방법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한다.

□ 포괄담보

포괄담보의 경우 담보금액 결정은 관세법상 사후납부와 환특법상 일괄납부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전년도 환급실적) \times 20/365\} + (전년도 환급실적 등) \times 20/365$ 이다.

또한, 관세법상 사후납부만을 이용할 경우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20/365」이며, 환특법상 일괄납부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 환급실적 등 20/365」이다.

다. 담보면제와 신용담보

신용담보란 세관장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담보제공

9) 김종근,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관세사』, 2004년(2) 봄호.

10)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11) 분할납부 가능신고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할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담보금액으로 가산세없이 제세액 100%만 설정한다.

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1) 담보면제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¹²⁾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³⁾.

- 관세법, 기타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 반출을 승인한 경우
-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
-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용담보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경우.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¹⁴⁾.

다음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이 되는 물품이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 ②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③ 최근 2년간 「관세법」의 위반¹⁵⁾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 ④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12)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

13) 관세법 제248조 제2항

1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15) 관세청장이 법 제270조, 법 제276조 및 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위의 ② 및 ③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법」의 위반,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신용담보

가) 신용담보의 의미

신용담보란 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은 우선 통관한 후 납부(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까지 납세보증보험 또는 은행지급보증 등을 담보물로 제공해야 하나, 신용도가 있는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경우 담보물 없이 업체의 신용만으로 관세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¹⁶⁾.

나) 신용담보업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관세법상 담보제공을 위한 신용담보업체 요건과 환급특례법상 담보제공을 위한 신용담보업체 요건으로 구분된다.

□ 관세법상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다만, 관세법 제270조, 제276조,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최근 2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¹⁷⁾.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제조업체의 산하 사업장 또는 연구소를 포함), 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16) 월간 『관세와 무역』, 2002년 제34권 제376호, pp. 35

17)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 체납 후 15일 이내의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제외.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

③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종합심사와 기획심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추천하여 관세청장이 녹색신고업체로 지정한 자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투자등급의 제조업체(산하 사업장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

① 기업어음: A3등급 이상(A1, A2, A3)

② 회사채: BBB등급 이상(AAA, AA, A, BBB)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3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 환급특례법상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39조 내지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8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대외무역업법 제9조 2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수출 및 환급실적이 있는 자.

▶ 매년 50만불 이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 공급실적을 포함)

▶ 매년 5백만원 이상 환급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 증명서의 세액을 포함)

○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업체

▶ 한국증권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관리종목 제외)

▶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다)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등 확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과 관련된 수출입실적 등의 확인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 등의 자료확인: 세관 수입통관시스템. 다만, 수입통관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관세체납 및 관세법 위반사실의 확인: 관세청 전산시스템
- 이익발생사실의 확인: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신용등급 해당 여부의 확인: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 사본(다만, 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평가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이 최근 3월 이내에 확인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인터넷 등에 최근 공시자료에 의해 추가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함)
- 녹색신고업체 지정 여부는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 또는 관세청 종합심사과 협조 확인
- 기타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필요시 관할 세무서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전화 등에 의하여 확인.

라) 신용담보한도액

신용담보한도액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¹⁸⁾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당해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납세실적 등 증가로 최근의 실적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 제세의 납부실적,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¹⁹⁾.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 및 기타 사항

18) 관세법상 사후납부: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20/365

19)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²⁰⁾. 관할지세관장은 당해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설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30/100범위 내에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수출입·납세·환급실적 등은 당해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납세실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²¹⁾.

한편, 신용담보업체가 부도나 회사정리에 들어갈 경우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절차를 거쳐서 신용담보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신용담보업체 자격의 부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도 등의 경우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²²⁾.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수출입실적·납세실적 및 환급실적 등에 변동이 있어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³⁾.

○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 동안의 제세 납부실적, 환급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한도액 조정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당해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30/100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이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담보부족으로 신용담보한도액으로는 원활한 시설재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용담보 지정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 2²⁴⁾에서 정하는 기준에

20)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2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3항

22) 월간 『관세와 무역』, 2002년 제34권 제377호, pp. 63

2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24) 관세법상 사후납부: 증액사용한도액 = 증액사용예정기간 중 납부할 제세 상당액 × 20/증액사

의거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마)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제도 시행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제도 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성실납세자 중에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이하 ‘아관파’)를 선정한다. 아관파로 선정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검사를 면제하는 한편, 관세관련 세무조사(수입건별심사, 기획심사, 관세환급심사) 일체를 면제하고 신용담보한도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아관파 선정요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민간위원 5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 ▶ 관세청이 운영하는 납세성실도 90점 이상인 업체
- ▶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상 B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
- ▶ 연간 100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업체로서 10억원 이상의 조세를 납부하는 업체

□ 신용담보한도 증액

신용담보제도는 수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전년도 납부액 기준 일정한도액만큼 담보를 생략해 주는 제도인데 일반납세자의 경우는 동 담보생략한도액이 전년도 납부액 기준 20~45일분이나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30일분에서 최고 70일분(월별납부대상 업체)으로 늘려준다.

5. 담보물의 종류

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금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 은행지급보증서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부동산
-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다만, 은행지급보증서,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나. 담보물의 내용

위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채권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및 주권.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채권 및 주권을 제외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 법 제22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이어야 한다.

- 지급지가 은행일 것
- 만기는 일람출급일 것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있을 것

다. 담보물의 평가

1) 상장증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상장 후 매매사실이 있는 증권: 담보로 제공된 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격
- 위의 증권 외의 증권: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2) 국공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및 증권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

3) 토지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부동산·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평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6. 담보제공 사유별 담보액 평가

가.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 시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수입자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물은 현금, 채권 및 은행지급보증서 등이 있으며, 담보물은 ① 현금의 경우 잠정상계관세액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으로 평가되고, ② 기타 담보의 경우 잠정상계관세액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의 103% 상당액으로 평가된다.

나. 감면세 또는 분할납부 적용물품

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수입자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물은 현금, 채권 및 은행지급보증서 등이 있으며, 담보물은 ① 현금의 경우 제세액의 120% 상당액으로 평가되고, ② 기타 담보의 경우 제세액의 123.6% 상당액으로 평가된다.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수입자는 담보물을

제공하여 한다. 담보물은 현금, 채권 및 은행지급보증서 등이 있으며, 담보물은 ① 현금의 경우 분할납부 관세액 상당액으로 평가되고, ② 기타 담보의 경우 분할납부 관세액의 103% 상당액으로 평가된다.

다. 기타의 사유

수입자가 보세구역 외에 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보세구역 외에 보수작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외의 작업을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 보세운송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승인을 득한 경우 및 수입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담보물은 ① 현금의 경우 분할납부 관세 상당액으로 평가되고, ② 기타 담보의 경우 분할납부 관세액의 103% 상당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수리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7. 담보의 변경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²⁵⁾.

포괄담보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포괄담보제공 신청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²⁶⁾, 포괄담보해제 신청서 및 개별(포괄)담보제공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관세법시행령 제12조

26) 제출생략 가능

8. 담보의 종료

가. 담보의 해제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 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날의 3근무일 전까지 포괄담보해제 신청서와 개별(포괄)담보제공 영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²⁷⁾. 다만, 과세채무가 이행 시에는 담보의 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담보의 관세충당

1) 관세충당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담보를 당해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경과 후에 충당하더라도 관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직접 잔액을 교부하여야 한다²⁸⁾.

2) 담보물의 매각

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성명·담

27) 관세법시행령 제13조

28)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

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²⁹⁾.

29) 관세법시행령 제14조

III.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1. EU

EU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에 따라 별도의 관세법이 존재하지만, ‘공동체 관세법 (Community Customs Code, 이하 CCC)’에서 공동체 차원의 통일화된 기준을 제정하였다. 공동체 관세법(CCC)을 기준으로 유럽의 관세담보제도를 다음에서 살펴본다.

가. 담보제공 사유

관세담보란 관세채무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이 제공을 요구하는 담보이다³⁰⁾. 세관당국은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관세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³¹⁾.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 관세규정상 담보의 제공이 선택적(optional)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당국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관세채무가 규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³²⁾.

세관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법정기한 내에 또는 세관당국이 부과되었거나 또는 부과될 수 있었던 관세채무가 법정기한 내에 납부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이어야 한다³³⁾.

관세채무자가 납부에 대하여 편익을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 관세납부는 반드시 규정된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³⁴⁾. 하지만, 관세납부가 연기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과 담보의 제공으로 연기할 수 있다³⁵⁾.

30) CCC 제189조 제1항

31) CCC 제189조 제3항

32) CCC 제190조 제1항

33) CCC 제190조 제2항

34) CCC 제244조

세무당국은 채무자에게 납부의 연기 이외에 납부상의 편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을 부여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러한 담보의 제공으로 인해 담보제공의무자가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³⁶⁾.

나. 담보제공자

관세당국은 관세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세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책임을 지게 될 자이다³⁷⁾. 다만, 세관당국이 허가할 경우 담보제공 의무자 이외의 자도 담보를 부담할 수 있다³⁸⁾.

또한, 보증인(Grantor)은 관세채무액의 담보금액을 채무인과 연대 또는 단독으로 지불할 것을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보증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³⁹⁾. 보증인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거주하는 자(Person)이어야 하며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세관당국은 보증인이나 제공된 보증물의 종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⁴⁰⁾.

다. 담보제공 방법

관세담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관세채무에 대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⁴¹⁾. 또한, 한 회원국에서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담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된다⁴²⁾. 다만, 관세채무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하는 자가 공공기관인 경

35) CCC 제225조

36) CCC 제229조 a)

37) CCC 제189조 제1항

38) CCC 제189조 제3항

39) CCC 제195조

40) CCC 제195조

41) CCC 제189조 제2항

우에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다⁴³⁾.

관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관세채무에 대해서 하나의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한다⁴⁴⁾. 하지만, 담보제공의무자나 담보제공의무자 이외의 자로 세관당국이 담보의 제공을 인정한 자는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관세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포괄담보(Comprehensive Security)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담보 제공자는 세관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⁴⁵⁾.

라. 담보물

1) 담보물의 종류

담보물은 현금·예금만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인(grantor)의 지급보증도 담보물의 하나에 포함되어 규정된다⁴⁶⁾.

2) 담보물의 평가

현금·예금은 담보가 요구된 회원국 통화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당국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는 수표의 제출 및 세관당국이 지급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기타 방법으로서의 제출은 현금·예금으로 담보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⁴⁷⁾. 또한, 현금·예금과 현금·예금에 상응하는 지급수단으로 제공한 담보는 회원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⁴⁸⁾.

보증인은 관세채무액에 대하여 채무인과 연대하여 또는 단독으로 지급할 것을 약

42) CCC 제189조 제2항

43) CCC 제189조 제4항

44) CCC 제189조 제2항

45) CCC 제191조

46) CCC 제193조

47) CCC 제194조 제1항

48) CCC 제194조 제2항

정하는 자이다. 보증인에 의한 보증은 인적인 보증으로 현금·예금에 의한 물적인 보증과는 다르다. 따라서 세관당국은 보증인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마. 담보의 변경

제공된 담보가 법정기한 내의 관세채무 지급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확실히 또는 충분히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은 관세채무의무자나 관세채무의무자가 될 자에게 추가적인 담보물의 제공 또는 최초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⁴⁹⁾.

바. 담보의 종료

담보는 관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된 관세채무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때까지 해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관세채무가 소멸되거나 또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는 즉시 해제된다⁵⁰⁾.

관세채무가 일부 소멸되었거나 또는 담보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담보의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⁵¹⁾.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 채무자에 대한 관세액 산정 및 통지

채무자에 대한 관세액의 산정 및 통지는 회원국별로 규정된 실무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관세채무가 부과되는 사정에 따라 관세액이 납부될 가능성을 고려

49) CCC 제198조

50) CCC 제199조 제1항

51) CCC 제199조 제2항

하여 달리 규정되어야 한다⁵²⁾.

□ 관세담보 제공의 의무화

세관당국은 공동체 관세규정상 담보의 제공이 선택적(optional)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관세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⁵³⁾.

세무당국이 채무자에게 납부의 연기와 같은 납부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관세채권의 회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당국이 채무자에게 납부의 연기 이외에 납부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러한 담보의 제공으로 인해 담보제공의무자가 심각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⁵⁴⁾.

2. 일 본

가. 담보제공 사유

다음의 경우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세관당국은 담보제공의무자에게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일본 관세법 제9조의 2, 필요적 담보)
- 수입허가 전 인취의 경우(일본 관세법 제9조의 2, 필요적 담보)
- 보세공장 외 보세작업 등의 경우(일본 관세법 제61조, 제62조의 15, 임의담보)
- 보세전시장 내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일본 관세법 제62조의 4, 제62조의 15, 임의담보)
- 보세운송의 경우(일본 관세법 제63조, 임의담보)

52) CCC 제217조 제2항

53) CCC 제189조 제3항

54) CCC 제229조 a)

- 우편물 납세 전 수취의 경우(일본 관세법 제77조, 임의담보)
- 제조용 원료품, 재수출감면세물품, 수출물품제조용 원료품, 석유화학제품제조용 원유 또는 제조용 원료품(일본 관세정률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7조, 제7조의 3, 임의담보)

나. 담보제공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자이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수입하는 사람이다⁵⁵⁾. 위의 담보제공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로서 제공한 금전을 관세의 납부에 충당할 수 있다⁵⁶⁾.

다. 담보제공 방법

국채, 지방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담보물을 공탁하여 그 공탁서의 원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국채또는사채등등록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사채, 지방채 그 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받아 등록필통지서 또는 담보권등록내용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⁵⁷⁾.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해야 한다⁵⁸⁾.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증인의 보증을 증명하는 서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⁵⁹⁾.

“금전 담보에 의한 납부(일본 관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로서 제공

55) 일본 관세법 제6조

56) 일본 관세법 제10조

57)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58)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59)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

한 금전을 해당 담보와 관련되는 관세의 납부에 충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⁶⁰⁾. 서면의 제출 시에는 담보로 제공된 금전액(담보로서 제공된 금전액이 해당 담보와 관련되는 관세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수)에 상당하는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⁶¹⁾.

일본의 경우 관세의 담보는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원인(예를 들면 수입허가 전 인취승인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하여야 하지만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담보원인이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면, 수입방사성물질 운송에 반복 사용되는 용기에 대한 재수출면세 등)에는 담보의 제공 및 해제의 관한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여 두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담보제공채무에 적용하는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리 일정액을 제공하는 담보를 거치(據置)담보라 한다. 이 경우의 담보는 국채, 지방채, 금전 및 보증인에 의한 보증이 있다⁶²⁾.

라. 담보물

1) 담보물의 종류

□ 관세담보물

관세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물과 일치하며 다음과 같다⁶³⁾.

○ 국채 및 지방채

○ 사채(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포함), 그 외의 유가증권으로 세무서장(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 또는 국세국장이 담보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국세국장)이 인정하는 것

60)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5 제1항

61)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5 제2항

62) 김종근,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관세사』, 2004년(2) 봄호.

63) 일본 국세통칙법 제510조

- 토지
- 건물, 입목, 등기되는 선박, 등록을 받은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자동차, 등기를 받은 건설기계로 보험에 첨부한 것
- 철도 재단, 공장 재단, 광업 재단, 궤도 재단, 운하 재단, 어업 재단, 항만 운송 사업 재단, 도로 교통사업재단 및 관광시설재단
- 세무서가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 금전

□ 납부기한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관세담보물

납부기한연장제도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써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납부기한연장제도에는 다음의 3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담보물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첫째, 개별연장방식은 개개의 수입신고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입자가 신고할 때마다 관세(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부기한연장(개별)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수입허가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개별 납부기한연장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금전, 보증인의 보증 및 부동산 등에 한정한다.

둘째, 포괄연장방식은 특정 월의 수입 신고에 대해서 수입자가 해당 특정 월의 지난 달 말일까지 관세(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부기한연장(포괄)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특정 월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의 연장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포괄납부기한의 연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금전 및 보증인의 보증에 한정되어 있다.

셋째, 특례연장방식은 간이신고제도를 이용해 인수 신고를 한 특례 수입자가 특례 신고서의 제출 기한 내에 관세(내국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겸용) 납부기한연장(특례 신고)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특례 신고서의 제출 기한부터 2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의 연장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특례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국채, 지방채, 금전 및 보증인의 보증에 한정되어 있다.

2) 담보물의 평가

국세통칙법 제510조 각호(담보의 종류)에 따른 담보 중에 국채 및 지방채의 가액은 채권 금액으로 평가된다⁶⁴⁾.

마. 담보의 변경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했을 때 또는 보증인의 자력이 납세를 담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담보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및 담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⁶⁵⁾.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제공한 국채, 지방채, 사채 그 외의 채권이 상환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이것들을 대신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⁶⁶⁾.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담보물 또는 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다⁶⁷⁾.

바. 담보의 종료

□ 담보의 충당과 징수

관세의 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납세의무자는 담보로 제공한 금전을 관세의 납부에 충당할 수 있다⁶⁸⁾. 국세통칙법 제52조(담보의 처분)의 규정은 관세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의 규정⁶⁹⁾에 의해 관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⁷⁰⁾과 관련하여 또는 납세의 고지⁷¹⁾의 납부기한⁷²⁾까지

64)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

65)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66)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2항

67)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68)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69) 일본 관세법 제9조

70) 일본 관세법 제9조의 2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납부기한의 연장)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납부

관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하여 준용된다. 국세통칙법에 의한 담보의 처분규정은 아래와 같다.

세무서장은 담보의 제공되고 있는 국세가 그 납부기한⁷³⁾까지 완납되지 않을 때 또는 담보의 제공이 되고 있는 국세에 대한 연납, 납세의 유예 혹은 징수 혹은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그 국세에 충당하거나 그 제공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처분하여 그 국세 및 해당 재산의 처분비로 충당하거나 보증인에게 그 국세를 납부시킨다⁷⁴⁾.

세무서장은 국세의 충당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 동향의 국세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 납부시키는 금액, 납부의 기한, 납부 장소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통지서에 의한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 또는 거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⁷⁵⁾.

보증인이 그 국세를 납부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대해, 납부최고서에 의해 그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납부최고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납부의 기한부터 50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⁷⁶⁾.

담보로서 제공된 금전 또는 담보로서 제공된 재산의 처분의 대금을 동향의 국세 및 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또한 보증인이 그 납부해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않고 해당 담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대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⁷⁷⁾.

해야 할 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에 연줄은, 해당 연장된 기한

71) 일본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72) 연체세액에 대해서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관세의 납부기한, 관세법 제11조(관세의 징수) 및 제12조 제1항 다만 책(연체세액의 계산의 특례)에 대해 이러한 기한을 「납부기한」이라고 한다.

73) 일본 국세통칙법 제31조 제2항(조상청구)에 규정하는 앞당김과 관련되는 기한 및 납세의 유예 또는 징수 혹은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와 관련되는 기한을 포함한다.

74) 일본 국세통칙법 제52조 제1항

75) 일본 국세통칙법 제52조 제2항

76) 일본 국세통칙법 제52조 제3항

77) 일본 국세통칙법 제52조 제4항

□ 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즉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담보의 제공(관세법 제7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⁷⁸⁾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세 등이 납부되었을 때, 혹은 관세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관세 등의 납부해야 할 기한이 연장⁷⁹⁾되었을 때⁸⁰⁾.
- 납부기한의 연장(관세법 제9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세가 납부되었을 때 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 때⁸¹⁾.
- 보세공장 외에서의 보세작업(관세법 제61조 제2항)⁸²⁾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은 화물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재차 수입⁸³⁾되거나 혹은 보세지역에 넣어졌을 때, 관세가 징수되었을 때 등⁸⁴⁾.
- 보세 전시장에서 판매될 전망이 있는 화물에 대한 담보의 제공(관세법 제62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세가 납부되거나 혹은 징수되었을 때, 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관세가 징수되지 않을 때⁸⁵⁾.
- 보세운송(관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승인을 받은 화물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운송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또는 운송의 기간의 경과에 의한 관세의 징수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징수되었을 때 혹은 다른 규정에 의해 관세가 징수되지 않을 때⁸⁶⁾.
- 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인수(관세법 제73조 제1항) 또는 관세의 납부 전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수취(관세법 제7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

78) 일본 관세법 제7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담보와 관련되는 증담보를 제공했을 경우는, 해당 증담보를 포함한다.

79) 그 연장과 관련되는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에 한정한다.

80)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1항

81)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2항

82) 일본 관세법 제62조의 15(종합 보세지역)에 두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3) 일본 관세법 제73조 제1항(수입의 허가 전에 있어서의 화물의 인수)의 규정에 의한 인수를 포함한다.

84)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3항

85)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4항

86)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5항

을 경우에, 관세가 납부되어 혹은 징수되었을 때 또는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관세가 징수되지 않을 때⁸⁷⁾.

- 부당염가판매 관세(관세정률법 제8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세가 징수되었을 때⁸⁸⁾.
-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또는 면세(관세정률법 제13조 제3항) 또는 재수출 감세(관세정률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 관세의 경감 혹은 면세의 조건이 성취했을 때⁸⁹⁾.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 관세본드제도

관세본드는 납부의무자가 화물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 및 주세·담배세·석유세, 그 외 내국 소비세에 대해 납부기한연장제도 또는 허가전인수제도(BP제도)를 이용할 경우에, 세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로 이용되는 법령(납세)보증증권이다.

관세본드의 보증금액은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첫째, 개별담보의 보증금액은 수입 신고 시의 연장세액 또는 BP신청 시 관청장이 지정하는 금액이다. 둘째, 거치담보의 보증금액은 1년간의 예상 세액 합계액의 4/12(술, 담배, 석유, 가스는 2/12)에 계절 변동 등에 의한 증가분을 조정하여 설정한다.

관세본드의 보증기간도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첫째, 개별담보용 본드의 보증기간은 한 건마다의 수입 신고·BP신청에 따르는 납부기한을 커버하도록 설정되므로 통상 4개월(6개월, 1년간도 가능)이 된다. 둘째, 거치담보용 본드의 보증기간은 채권발생기간이며, 원칙으로서 1년간이다. 다만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 만료 후에도 담보한다.

87)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6항

88)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7항

89) 일본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4 제8항

3. 미국

미국의 관세담보제도는 기본적으로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수입자가 수입한 물건은 일차적으로 관세의 담보물이 되나 청산제도에 따른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증받은 증권으로 담보물이 대체된다. 이를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라고 하는데, 본 제도는 납세자가 수행해야 하는 수입자 의무사항⁹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3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 관세담보제도의 개요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란 수입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Bonds)와 기타 담보증권을 정부에 제공하는 제도이다⁹¹⁾. 즉,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에 따라 보증회사는 수입자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법령을 적기에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정부에게 보증한다.

결국,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는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미국 국민과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증서(Bonds)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수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관세수입을 보장하고 법령준수를 담보하는 제도이지 수입업자(보험가입업자)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하거나 불가능한 부담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는 제도는 아니다⁹²⁾.

수입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도 수입자와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수입자가 제반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수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⁹³⁾.

90) 물품검사를 용이하게 함,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링이나 포장을 함, 화물검사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기록, 관세 등을 납부.

91) 19 U.S.C. §1623(1994)

92) 문춘호, 「미국 Customs Bonds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관세와 무역』(2001년 1월호).

93) 김중근,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관세사』(2004년(2) 봄호).

나. 관세보증(Customs Bonds) 제공 사유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업자는 통관 시에 부과될 모든 관세, 조세 및 각종 비용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증서(Bonds)를 제공하여야 한다⁹⁴⁾. 따라서 수입업자가 ① 개별적으로 단순 수입신고(보편적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② 쿼터나 비자를 요하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③ 자동차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④ 타정부기관이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⑤ 일시수입(TTB)하는 경우, ⑥ 샘플 및 작업용 장비를 일시 수입하는 경우, ⑦ 면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및 ⑧ 물품의 수입 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보증서(Bonds)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기납부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물품 등을 수입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한 상태에서 물품에 대한 가공없이 원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보세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등의 목적으로 세관에 보증(bond)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보증의 사유는 관세보증서(Customs Bonds)의 종류에서 다르다.

다. 관세보증(Customs Bonds) 제공자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Liabilities for the payment of duties)를 부담한다⁹⁵⁾. 세관은 수입된 물품을 점유(custody)하는 중에는 동 물품에 대한 유치권(Lien against the goods)을 행사할 수 있으나⁹⁶⁾, 동 물품이 세관을 떠난 이후에는 수입자의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⁹⁷⁾.

따라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관은 수입되는 물품이 통관항에 반입될 때 수입업자는 추산세액(estimated duties)을 예치(deposit)하여야 한다⁹⁸⁾.

94) 19 C.F.R. §142.19 (1989)

95) 19 C.F.R. §141.1 (1989)

96) 19 C.F.R. §141.1(d) (1989)

97) 19 C.F.R. §141.1(c) (1989)

98) 19 C.F.R. §141.101-105 (1989)

라. 관세보증(Customs Bonds) 제공 방법

보증은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현금을 공탁할 수도 있다. 또한, 통관대행업자(customs broker)가 통관수속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업자는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자신의 채권을 제공할 수 있다.

1) 현물담보

미국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을 세관이 점유(custody)하는 중에는 그 물품이 현물담보물이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관세보증서로 관세채권을 보증받는 것이 기본적인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신용담보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관세에서 요구하는 담보는 현금을 비롯하여 즉시 환가가 가능한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특정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발행자(Principal)와 보증인(Surety)의 연서서명으로 신용담보가 가능하다. 이 신용담보를 관세행정에 도입한 것이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이다⁹⁹⁾.

관세보증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를 크게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단일신고보증서(single entry bond)

보증서(Bond)에 표시된 1회 거래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증서로서 이에선 즉시 인도소비신고보증서와 보세창고입고보증서가 속한다.

99) 『세계 주요국의 관세제도』, 대한상공회의소, pp. 27~33.

□ 기간보증서(Term bond)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자의 계속되는 거래에 적용되는 보증서(Bond)이나 단일 항구에만 적용 가능하다.

□ 총괄보증서(Blanket bond)

기간보증서(Bond)와 동일하나 여러 항구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증서이다.

□ 연속보증서(Continuing bond)

보증서(Bond)의 어느 일방이 보증서의 효력을 중단시킬 때까지는 유효한 보증서로 이에는 Carrier's Bond가 있다.

□ 통합보증서(Consolidated bond)

서로 상이한 몇 가지 종류의 보증서(Bond)를 통합한 것으로서 Consolidated Aircraft Bond가 이에 속한다.

마. 담보물 및 관세보증서(Customs Bonds)

1) 담보물의 종류

수입된 물건은 관세의 제1차 담보물이며, 통관 시 담보는 미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증받은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통관대행업자에게 통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채권도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다¹⁰⁰⁾.

100) 『세계 주요국의 관세제도』, 대한상공회의소, p. 14.

2) 관세보증서(Customs Bonds)의 종류¹⁰¹⁾

관세보증서(Customs Bonds)의 종류는 관세보증을 하는 사유에 따라 구분된다. 관세보증서의 종류는 Activity에 따라 구분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Activity 1: (수입자와 관세사용 Bond) Customs Bond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보증범위는 즉시출고를 위한 통관, 일시수입, 보세운송, 보세창고 반출입 및 소비에 달한다.
- ② Activity 1a: (환급금반환용 Bond) 사전환급용 Bond와 비가공물품환급용 Bond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전환급용 Bond의 경우, 사전환급용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관에서 환급액을 심의 결정하기 전에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비가공물품환급용 Bond의 경우, 물품을 수입한 후 관세 등을 납부한 상태에서 물품에 대한 가공없이 원상태로 재수출할 물품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Activity 2: (보세물품보관용 Bond) 보세장치장, 컨테이너운송집하장, 개항장내 용달업자(Bond cartman), 보세운송업자(Bonded Carrier)용 Bond
- ④ Activity 3: (국제운송업자용 Bond) 국제운송용 항공기 및 선박의 입국 및 통관용 Bond
- ⑤ 기타의 Customs Bonds: 특수목적용 Bond
 - Activity 3a: 국제운송기기용 Bond
 - Activity 4: 자유무역지대 입주자용 Bond
 - Activity 5: 품질검사용 Bond
 - Activity 6: Wool&Fur Products Liability Act용 Bond
 - Activity 7: 선하증권(B/L)용 Bond
 - Activity 8: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유치용 Bond
 - Activity 9: Neutrality용 Bond
 - Activity 10: 기소물품에 대한 재판비용 Bond

101) 문춘호, 「미국 Customs Bonds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관세와 무역』 2001년 1월호

3) 담보물의 평가

미국의 경우 담보물은 대부분 현금과 보증보험이다. 현금 담보물의 경우 현금가액으로 담보물을 평가한다. 담보물이 보증보험인 경우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으로 평가한다. 보증금액은 관세 등의 납부 또는 법률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 개별물품에 대해서 각 건별로 제공되는 보증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¹⁰²⁾.

- ① 개별적으로 단순 수입신고(보편적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관세
- ② 쿼터나 비자를 요하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3
- ③ 자동차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3
- ④ 타정부기관이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가격×3
- ⑤ 일시수입(TIB)하는 경우: 관세×2
- ⑥ 샘플 및 작업용 장비를 일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110%
- ⑦ 면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의 10%
- ⑧ 물품의 수입 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관이 결정¹⁰³⁾

포괄담보의 경우, 관세보증서(Customs Bonds)의 종류별로 보증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는 서식 301호(Form 301)에 따라 결정된다.

바. 관세보증(Customs Bonds)의 변경 및 종료

현금으로 담보한 경우, 수입업자가 예치한 금액이 관세금액보다 부족하다면 관세전문가(import specialist)는 수입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청한다¹⁰⁴⁾.

보증보험으로 담보한 경우, 보증으로 관세금액이 전액 충족되지 못하다면 부족한 잔액은 수입업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personal charge against the importer)이 되며, 연방검사(U.S. Attorney)가 그 징수를 담당한다¹⁰⁵⁾. 관세가 납부되지 않는 경

102) 19 C.F.R. §1623.(a) (1989), 19 C.F.R. §113.13 (1989)

103) 세관이 결정하는 보증보험금은 관세청 예규로 결정하거나 세관장의 재량에 의거 결정된다.

104) 19 U.S.C. §1505(b) (1994)

우, 세관은 동 수입행위에 보증을 발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에 따른 관세금액의 납부를 요구한다.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미국의 경우 관세보증제도(Customs Bonds)에 의해서 관세채권을 확보한다. 본 제도에 따르면, 수입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보증회사는 보험금을 정부(세관)에 납부하게 되며, 수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¹⁰⁶⁾. 결국 관세채권 미회수 위험은 정부(세관)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된다.

관세보증(Customs Bonds)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입자의 납세의무와 법률준수의무는 보증보험료 납부와 보증약관 준수의무로 대체되는바, 수입자가 보증서(Bond)상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는 보증을 즉시 시행한다. 즉, 수입자가 통관 불합격에 의한 물품 재반입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은 즉시 실행되어 물품가격에 관세를 부과한 금액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된다¹⁰⁷⁾.

미국의 통관제도는 근본적으로 청산제도이기 때문에 물품 인도 후 청산 시까지의¹⁰⁸⁾ 관세과부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세보증서(Customs Bonds)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세창고 입고 중 또는 입고 이후의 소비신고로부터 통관될 때까지의 관세과부족을 담보하기 위해서 창고입고증권(Warehouse Entry Bond)을 요구하고 있다¹⁰⁹⁾.

105) 31 U.S.C. §3713, 19 C.F.R. §141.1(c) (1992)

106) 문춘호, 「미국 Customs Bonds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관세와 무역』 2001년 1월호

107) 문춘호, 「미국 Customs Bonds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관세와 무역』 2001년 1월호

108) 실제로는 청산 후에도 영구적으로 수입사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에 대한 담보임.

109) 『세계 주요국의 관세제도』, 대한상공회의소, p. 17.

4. 호 주

호주의 경우 관세담보는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관세담보(벌칙)법(Customs Undertakings (Penalties) Act 1981) 및 관세율법(Custom Tariff Act 1975)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Customs Act 1901)에서는 관세담보의 제공사유, 담보제공 절차 및 담보물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Customs Act 1901)에 따르면, 관세담보는 첫째, 덤핑·상계관세(Pending Interim duty)와 관련하여 그 관세금액이 미결정된 경우나¹¹⁰⁾ 부과가 연기된 덤핑·상계관세(Interim duty)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보증이 위반된 경우¹¹¹⁾, 둘째, 벌칙금(Penalty)의 회수를 위하여 관세담보(벌칙)법(Customs Undertakings (Penalties) Act 1981)에서 담보의 제공을 규정한 경우¹¹²⁾, 셋째, 특정한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하는 경우 등)에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¹¹³⁾.

가. 담보제공 사유

1) 덤핑·상계관세(Interim duty)가 미결정(Pending)되는 경우

세관은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관세율(반덤핑)법(Customs Tariff(Anti Dumping) Act 197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덤핑·상계관세(Interim duty)와 관련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¹¹⁴⁾.

110) Customs Act 1901 §42(1B)

111) Customs Act 1901 §42(1C)

112) Customs Act 1901 §42(1A)

113) Customs Act 1901 §42

114) Customs Act 1901 §42(1B)

2) 덤핑관세나 상계관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업자가 보증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여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수출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여 호주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것과 호주의 산업 수립 방해를 막기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운송을 미래에 할 것임을 보증한다면 덤핑관세(Dumping Duty)의 통지(notice) 여부와 무관하게, 재무부 장관은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¹¹⁵⁾. 하지만 수출업자의 보증이 불이행될 경우, 관세율법(Custom Tariff Act 1975)에 따라 세관은 수입된 상품이나 동일 종류의 상품에 대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¹¹⁶⁾.

둘째, 수출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여 호주의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것과 호주의 산업 수립 방해를 막기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운송을 미래에 할 것임을 보증한다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의 통지(notice)여부와 무관하게, 재무부 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¹¹⁷⁾. 하지만 수출업자의 보증이 불이행될 경우, 관세율법(Custom Tariff Act 1975)에 따라 세관은 수입된 상품이나 동일 종류의 상품에 대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¹¹⁸⁾.

3) Tender scheme의 이행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담보(벌칙)법(Customs Undertakings (Penalties) Act 1981)에 따라 지급해야할 벌금에 대해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¹¹⁹⁾.

재무부 장관은 특정상품에 대해 수량, 가격 및 관세율을 특정한 기간 동안에 국내 소비를 위하여 상품을 공급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Tender scheme 이라고 한다¹²⁰⁾. Tender scheme에 따라 수입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소비를 위

115) Customs Act 1901 §269TG(4)

116) Customs Act 1901 §42(1C), Customs Securities (Penalties) Act 1981 §4

117) Customs Act 1901 §269TJ(3)

118) Customs Act 1901 §42(1C), Customs Securities (Penalties) Act 1981 §4

119) Customs Act 1901 §42(1A)

하여 수량, 가격 및 관세율이 특정된 상품을 공급하게 하는 제안서(tender)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안자는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을 보증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CEO)에게 제출한다¹²¹⁾. 하지만 제안자가 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가 지급해야 할 벌과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¹²²⁾.

4) 일시수입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일시수입면세제도¹²³⁾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위한 상품, 특정종류의 물품 또는 특정목적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납부를 면제하고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보나 보증이 제공되어야 한다¹²⁴⁾.

여기서 ① 특정부류의 사람이란 여행자와 일시 거주자를 말하고, ② 특정 종류의 물품이란 여행자의 상품, 결혼선물, 보통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영화용 필름, 무대의상, 무대장치 등이 아닌 것으로 공공전시와 오락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 및 측정 또는 평가 장치 등의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③ 특정목적이라 함은 세관장에 의하여 승인된 조립 또는 기타 산업목적과 측정 또는 평가를 말하고, ④ 수입신고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162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입면세물품에 대하여 실행되어야 한다¹²⁵⁾.

5) TEXCO(Tariff Export concession Scheme)가 적용되는 경우

TEXCO(Tariff Export concession Scheme)는 제조, 가공 후 수출할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관세징수를 유보하는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입자가 신청하며, 대부분의 경우 담보가 필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세관이 담보를 요구할

120) Customs Act 1901 §266(1)

121) Customs Act 1901 §267(1)

122) Customs Act 1901 §42(1A), Customs Securities (Penalties) Act 1981 §4

123) 일시수입면세제도는 한국의 재수출조건부 면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124) Customs Act 1901 §162

125) 「호주의 관세제도 연구(V)」, 『관세』 1999년 12월호, 한국관세연구소, p. 50.

수도 있다¹²⁶⁾.

6)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신고를 하는 상품의 소유자에게 그 상품이 수출신고를 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¹²⁷⁾.

나. 담보제공자

담보의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관세법(Customs Act)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된 사람으로, Tender scheme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서는 제안자가 담보 제공자가 되며, 덤핑관세나 상계관세와 관련한 담보 제공자는 수출업자가 담보 제공자가 되고,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품의 소유자가 담보 제공자가 되며, 일시수입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담보제공자가 된다.

다. 담보제공 방법

세관은 관세법(Customs Act)에서 규정된 담보제공 사유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¹²⁸⁾. 담보물은 관세청장(Collector)¹²⁹⁾이 승인한 절차와 형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담보물의 종류에는 현금예치금, 채권, 보증 등이 있다¹³⁰⁾.

담보물이 일정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purpose)으로 제공될 때, 관세청장(CEO)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담보물은 관세청장이 승인한 기간과 금액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담보가 제공될 수 있다¹³¹⁾.

126) 「호주의 관세제도 연구(IV)」, 『관세』 1999년 11월호, 한국관세연구소, p. 66.

127) Customs Act 1901 §117

128) Customs Act 1901 §42(1)

129) Customs Act 1901 §8(1)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지역 관리자 등을 Collector로 정의함.

130) Customs Act 1901 §43

131) Customs Act 1901 §44

라. 담보물

담보물의 종류에는 현금예치금(Cash), 채권(Commonwealth Bonds), 관세청장(Collector)이 승인한 결제수단 및 보증 등이 있다¹³²⁾. 다만, 모든 담보물은 제공된 후 3년이 경과하면 관세청장(CEO)에 의해서 취소된다¹³³⁾. 담보물의 가치는 관세채무의 금액과 같아야 한다¹³⁴⁾.

마. 담보의 변경

관세청장(Collector)은 담보물의 담보능력이 부족할 경우, 언제라도 새로운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담보물은 지체없이 제공되어야 한다¹³⁵⁾.

바. 담보의 종료

□ 담보의 충당과 징수

담보물로 관세채무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 관세청장(Collector)은 담보물(현금 제외)을 경매(Auction)나 사적방법(Private sale) 혹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¹³⁶⁾.

□ 담보의 해제

담보가 취소되거나(Cancel), 면제되거나(Discharge, Release), 채무를 이행(변제)하는(Satisfy) 경우에는 관세의 담보물은 반환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채

132) Customs Act 1901 §43, Customs Regulations 1926 §25(1)

133) Customs Act 1901 §45(1)

134) Customs Regulations 1926 §25(1)

135) Customs Act 1901 §46

136) Customs Regulations 1926 §25(3)

무에 충당되어서는 아니 된다¹³⁷⁾.

아. 관세채권 확보수단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은 관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Collector)은 담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담보물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¹³⁸⁾. 담보제공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법원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는 기간의 연장이나 기타의 면제사유로 인해서 관세채무가 감액되지 않는다¹³⁹⁾.

5. 영 국

영국(UK)의 관세체계는 EU 규정에 따르고 영국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EU 규정에 따르면, 관세채무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¹⁴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 관세규정상 담보의 제공이 선택적(optional)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당국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관세채무가 규정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¹⁴¹⁾. EU 규정에서 제시한 담보 제공사유는 첫째, 관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경우와¹⁴²⁾ 둘째, 채무자에게 관세납부상의 편익이 제공되는 경우이다¹⁴³⁾.

137) Customs Regulations 1926 §25(6)

138) Customs Act 1901 §48(1)

139) Customs Act 1901 §48(2)

140) CCC 제189조 제1항

141) CCC 제190조 제1항

142) CCC 제225조

143) CCC 제229조 a)

가. 담보제공 사유

EU 규정에서 제시한 담보제공 사유에 추가하여 영국의 관세법 및 관련통지(notice)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납부 연기제도(Duty Deferment Scheme)¹⁴⁴⁾

수입자(Importer)나 수입자의 대리인 및 창고(Warehouse), 무관세지역(Free zone)에 보관중인 상품의 소유자는 연기승인번호(Deferment Approval Number, DAN)와 수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개월 동안의 관세를 합산하여 다음달 15일¹⁴⁵⁾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관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를 경우 대략 2주에서 6주 정도 납부가 연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관세의 납부가 연기되는 경우에는 EU 관세법에 따라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담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월단위의 보증한도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잔여기간 동안에는 관세의 납부가 연기될 수 없으므로, 영업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

2) 자가소비(Home use) 또는 무관세유통(Free Circulation)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자가소비(Home use)를 위하여 또는 무관세유통(Free Circulation)을 위하여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관세의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그 수입 상품의 관세를 담보할 목적으로 현금을 예치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¹⁴⁶⁾.

144) Notice 101

145) 15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146)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c. 2) §119(1)

3) 가수입(Temporary Import)에 관한 관세의 면제 및 경감¹⁴⁷⁾

EU 역외로부터 EU 역내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입(Temporary Import)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제품¹⁴⁸⁾에 대해 관세 및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의 면제나 경감이 적용된다. 다만, 가수입되어 관세 등이 면제나 경감된 제품은 일정기간(최장 2년간) 안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가수입된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은 추가적인 가공이나 수리를 할 수 없다¹⁴⁹⁾. 수입자는 감면된 관세 등을 위하여 현금¹⁵⁰⁾이나 은행이 제공 하는 보증을 담보로 제공한다.

4) 가공 목적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의 면제 및 감세¹⁵¹⁾

역내가공 경감조치(Inward Processing Relief)는 EU 역내에서의 가공 목적으로 수입된 후, EU 역외국에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의 경감조치이다. 역내가공 경감조치와 관련하여 경감된 관세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의 의무가 없다. 다만, 역내가공 경감조치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나, 가공 후 이동¹⁵²⁾될 때 위험이 증가된다고 사료되는 특정한 상품을 이동시킬 경우에는는 담보를 제공한다. 이미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한다.

역외가공 경감조치는 가공처리나 수리 및 동종의 상품과의 교환 등을 위하여 EU 역외에 수출된 상품을 다시 EU 역내로 재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의 전부 내지 일부를 경감하는 조치이다. 역외가공 경감조치를 적용하는 과정 중에 첫째, 재수입업자가 이전 수입에 표준교환시스템(Standard Exchange System)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147) Notice 200

148) 컨테이너나 포장 용품, 전문적인 직업으로 사용되는 설비·기기, 전시용 제품, 상품 샘플, 의료용 기기, 경매용 물품, 수리 기간 중에 제공되는 대체품 등과 수송 수단(자동차·철도 차량·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만이 면제나 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

149) 수입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은 가능함.

150) 제품이 재수출될 때에 환불됨.

151) Notice 221, 235

152) 항만 간 이동, 가공하는 건물 간 이동 등이 포함됨.

있는 경우나 둘째, 재수입업자가 상품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나 관세감면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감된 수입관세와 관련하여 경감된 전부 내지 일부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담보물로는 현금 예치금 또는 은행과 같은 잘 알려진 보증인에 의한 보증이 사용된다. 담보금액은 잠재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금액이다. 담보는 그 수입된 상품 등에 대해서 재수출 신고를 할 때 또는 상품의 이동에 대해 담보물을 보관한 세관에 통보할 때 또는 대체상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때 종료된다.

5)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에 대한 예치금 제공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덤핑방지관세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에 의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조사 종료 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현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6) 공통농업정책세(Common Agricultural Policy Charge, CAP Charge) 부과

공통농업정책(CAP)은 EC 역내의 농업생산물이 세계 농업생산물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 EC 역내의 농산물 공급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통의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이다. 세계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EC 역내의 농산물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세계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EC 역내의 농산물 가격이 될 때까지 '관세(Duty)'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서 EC 역내의 농산물 생산이 세계시장의 변동에 따라 위축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세계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수출업자는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공통농업정책세(CAP Charge)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농업지불대리기관(Rural Payments Agency, RPA)에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농업지불대리기관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출신고를 하는 장소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나. 담보제공자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세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책임을 지게 될 자이다¹⁵³⁾. 관세납부를 연기할 경우에는 수입자(Importer)나 수입자의 대리인 및 창고(Warehouse), 무관세지역(Free zone)에 보관중인 상품의 소유자이며,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가 면제 및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담보제공자이다.

다. 담보제공 방법

1) 관세납부 연기제도(duty deferment scheme)¹⁵⁴⁾의 경우

EC의 관세법에 따라 관세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세납부 연기제도(duty deferment scheme)를 이용하는 관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및 건축조합(Building Society)에서 제공한 보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관세의무자는 ‘관세연기사무소(Central Deferment Office)’로부터 교부받은 C1201 양식(Form C1201)에 보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에 관련된 비용은 세입세관청(HM Revenue & Customs)이 부담하지 않고, 월단위의 보증한도가 초과된 경우, 해당 월의 잔여기간 동안에는 관세의 납부가 연기될 수 없으므로, 영업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

2) 가수입(Temporary Import)¹⁵⁵⁾의 경우

가수입(Temporary Import)을 하는 경우 과세될 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담보액은 관세로 충당된다.

153) CCC 제189조 제1항

154) Notice 101

155) Notice 200

담보는 현금 예치금(Deposit)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증(Guarantee)의 형태로 제공된다. 최소보증금액은 가수입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3) 수출입에 관세의 면제 및 감세¹⁵⁶⁾의 경우

수출입에 관세의 면제나 감세로 인해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전액의 관세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담보물은 현금이나 은행이 제공하는 보증을 사용하며, 담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관련 수출입과 관련된 상품¹⁵⁷⁾에 대한 평가보고서(Valuation statement)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담보물

관세청장은 요구하는 담보물은 채권(Bond)이나 보증인의 보증이다¹⁵⁸⁾. 담보금액은 잠재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세금액이다.

마. 담보의 변경

보증담보의 월별 보증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잔여기간 동안에는 관세의 납부가 연기될 수 없으므로, 영업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 현금담보의 보증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담보의 종료

담보는 그 수입된 상품 등에 대해서 재수출 신고를 할 때 또는 상품의 이동에 대해

156) Notice 221, 235

157) 거래별로 £10,000를 초과하는 상품

158)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c. 2) §157

담보물을 보관한 세관에 통보할 때 또는 대체상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때 종료된다.

사. 관세채권 확보수단

관세당국은 관세채무(Customs debt)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¹⁵⁹⁾. 또한 관세를 신고하는 자는 관세채무가 생기기 전에 관세에 대한 예치금(Deposit)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관세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예치금을 관세의 납부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치금액이 관세채무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한 예치금을 추가하여야 하고, 반대로 예치금액이 관세채무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채무가 없어진 시점에 초과된 예치금은 환급된다¹⁶⁰⁾.

159) CCC 제189조 제1항

160) Notice 1997.11

IV. 시사점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관세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담보제도를 살펴본 후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관세담보제도에는 운용의 효과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관세담보는 관세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증대시켜 국가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관세담보는 통관과 관련한 절차의 속도를 늦추고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 결국, 관세담보제도의 성공 여부는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도 관세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달려 있다.

□ 효율적인 관세담보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세관은 일반적으로 수입 등의 신고시점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유형은 크게 ① 납부기한이 연기되는 경우와 ② 기타 관세 납부절차상 편의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와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가 원칙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¹⁶¹⁾, 관세법에서 규정한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담보가 제공된다. 반면에 주요국의 경우에는 주로 관세납부가 연기되는 경우, 관세채권을 확보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보세구역과 관련된 수입의 경우 및 재수출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보제공 사유는 주요국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161) 관세법 제248조 제2항.

라의 경우 담보제공 사유의 범위가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넓고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입자의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잡한 담보제공 사유와 넓은 담보제공 범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관세채권 회수가능성 증대

원칙적으로 관세담보는 납세자의 관세채무가 즉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보의 종류가 복잡하여지고 금액이 커질 경우 담보의 평가 및 보관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과 담보제공자의 물류비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국의 경우 담보물이 대부분 현금 공탁금과 보험·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관세의 담보로 현금을 공탁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관세담보물은 관세보증서(Customs Bonds)를 사용한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관세보증서는 관세담보의 일종으로 물품수입 등의 신고를 위해서 세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경우에도 보험·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담보물의 종류에는 포함되지만, 미국의 관세보증서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다.

관세보증서를 통해서 관세채권의 회수위험은 세관으로부터 이를 발행한 보험·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만, 보험·금융기관의 미회수비용은 관세보증비용으로 담보제공자에게 부담된다. 결국, 보험·금융기관의 보증기능을 이용하여 세관은 관세채권에 대한 회수를 보장받고 담보제공자는 복잡한 담보제공의 절차를 간편히 수행할 수 있다.

□ 관세신용담보 한도의 경직성 완화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신용담보 한도액은 전년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나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급등에 따른 긴급물량 확보, 수입의 불규칙성 등으로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신용담보의 한도결정에 ① 업체의 성실도, ② 업체의 신용도 및 ③ 환율, 원자재

등 외부변수의 가격변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담보한도 설정기간도 확대하여 수출입업무를 원활화할 필요가 있다¹⁶²⁾.

162) 현재 45일임.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김성원, 『관세신용담보제도, 어떻게 운용되나』,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0.
- 김영춘, 『관세부과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각, 2002.
- 김중근,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 대한상공회의소, 『세계 주요국의 관세제도』, 1983.
- 문춘호, 『미국 Customs Bonds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1.
- 신동수, 『관세법』, 법경사, 1999.
- 임성균, 『호주의 관세제도 연구』, 한국관세무역연구원, 1999.
- 채동복, 『EU 관세법상 관세채무제도에 대한 고찰』, 법무부, 2004.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관세와 무역』, 제34권, 제1377호, 2002.
- 한국관세포럼, 『관세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2004.
- <http://www.wcoomd.org/ie/En/Magazine/magazine.html>
- http://customs.hmrc.gov.uk/channelsPortalWebApp/channelsPortalWebApp.portal?_nfpb=true&_pageLabel=pageImport_Home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226>
- <http://www.customs.go.jp/kaisei/hourei.htm>

세법연구 07-09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2007년 11월 23일 인쇄

2007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정재호·김태훈

발행인 황 성 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67-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